

## 2025년 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 모집 공고 (상시모집)

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2025년 6월 9일
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1

### 사업개요

#### 가. 사업명 : 베이비부머 라이트잡

#### 나. 사업내용

- 사업자가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, 1인당 월 40만원씩 신규 채용자에 소요되는 4대보험료, 교육훈련비,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

#### 다. 모집대상 : 50세 이상~65세미만 도민 2,000명 / 도내 소재 사업자\*

\* 도내 기업, 기관, 비영리 법인, 개인 사업장(소상공인, 학원, 병원 등) 등

#### 라. 지원내용 :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

- 지원금 신청 : 매달 20일까지 지원금 신청
- 지원금 지급시기 :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달까지 지급

## 2

## 사업자 지원 조건

### 가. 참여 자격 : ①~② 조건을 모두 충족

- ① 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채용자 주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사업자
  - ※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(지점)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, 기업당 적용하는 채용 인원 한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
  - ※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, 지점,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
- ② 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#### 〈참여자격 제외대상 기업〉

-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
- 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- ③ 일반유통·무도유통·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
  - \* 사업주 확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⑤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, 기관, 단체 등
- ⑥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
- ⑦ 파견직 근로자 제외
- ⑧ 중앙정부/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거나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장

### 나. 근로자 자격

-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\* 50세 이상 65세 미만\* 대한민국 국민
  - ※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
- \* 1961년~1975년 출생자
- 공고일('25.2.19.포함) 이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
- 주 15시간 ~ 주 36시간 미만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
- 근로계약 기간 만 1개월 이상으로 체결
- 아래 **채용 제외대상**에 해당하지 않는 자

〈채용 제외대상〉

- ① 사업주(법인은 대표이사)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
  -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
- ※ 단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가능

## 다. 지원금 지급 요건

### ○ (임금수준) 2025년 최저임금\* 이상 지급 필수(주휴수당 포함)

– (예시) 시급 10,030원 + 주휴수당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

구분	주 15시간	주 24시간*	주 30시간	주 35시간
근로시간	월 79시간	월 126시간	월 157시간	월 183시간
월 임금(이상)	792,370원	1,263,780원	1,574,710원	1,835,490원

\*〈주 24시간 기준, 월 임금 산정 원칙〉

1. 주단위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필수
2. 주 근무시간 24시간인 경우, 주휴시간은 (24시간/40시간 x 8시간)으로 4.8시간으로 계산
3.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(24시간 + 4.8시간) = 28.8시간으로 산출
4. 28.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.345주를 곱하면 = 28.8시간 x 4.345주 = 125.136시간으로 계산
5. 최저임금 위반 방지로 시간 단위 올림으로 계산하면 126시간으로 계산되며,  
최저임금 10,030원 적용 시 1,263,780원으로 산출

### ○ (임금지급) 사업자가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

### ○ (지원기간) 채용일~2025. 11. 30.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기간

※ 단 11월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는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함

### ○ (지원한도) 채용 근로자 인원 제한 없음

※ 본 사업은 3년간 지원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및 확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

### ○ (지급방법) 지원금 신청에 의해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

※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, 소진된 경우 미지급

## 가. 사업자 참여 신청

### ○ 방법① 일자리재단

- 아래 모아폼 링크에 접속 후 사업 참여 신청을 제출
-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단 상담원 사업안내 및 매칭지원

기업용 모아폼	<a href="https://moaform.com/q/kdpRfd">https://moaform.com/q/kdpRfd</a>
---------	---

### ○ 방법② 당근마켓

- 당근마켓 앱에서도 신청 가능!
  - 당근마켓 앱을 통한 신청 ⇒ 재단 상담사 연결

<당근마켓 앱을 통한 라이트잡 신청>
----------------------

- ▷ 당근 앱 설치 ⇒ 나의당근 ⇒ 알바 ⇒ 경기도 라이트잡 일자리 배너 클릭
- ⇒ 사업신청서 제출 ⇒ 재단 상담사 매칭지원 또는 당근앱을 통한 자율채용 병행
- ⇒ 재단 지원금 신청

## 나. 근로자 채용 방법

### ○ 사업자 자체 자율 채용 가능

- 채용이 어려울 경우 일자리재단,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알선 채용 지원

### ○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 ⇒ 매월 20일 지원금 지급 신청

※ 라이트잡 근로자와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관계이므로,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재단의 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

Q.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라이트잡(주15시간 이상 ~36시간 미만)으로 근무하고 싶다면?
--

☞ 방법1. 아래 모아폼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재단 전문 상담원이 맞춤형 일자리 매칭!

(근로자용 모아폼) <https://moaform.com/q/ctfEjr>

☞ 방법2. 잡아바 온라인 채용관 내 “라이트잡 전용채용관” 접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라이트잡 일자리 공고문을 검색 후 이력서 지원!

## 가. 지원금 신청

- (신청방법) 잡아바 어플라이 라이트잡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

잡아바 어플라이	<a href="https://apply.jobaba.net">https://apply.jobaba.net</a>
----------	---

- 해당 페이지에 서류 지원금 관련 서류 제출 → 일자리재단 측 서류 확인 및 보완 안내 → 적격심사(서면) → 지원금 지급

### ○ [필수]제출서류

- ①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(소정양식)
- ② 월별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(예: 임금지급대장, 급여이체내역서 등)
-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(고유번호증 등)
- ④ 사업자 통장 사본
- ⑤ 근로계약서 사본
- ⑥ 라이트잡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소정양식)
- ⑦ 라이트잡 근로자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
-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- 지원금 신청 : 매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(‘25.11월 근무분까지 가능)
- 지원금 지급시기 :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달 내
- 지원금 지급액 수 : 근로자 1인 400,000원 × 근무 개월 수
- 지원금 일할계산 : 근로자의 월임금이 40만원이 안되는 경우 일할계산

< 4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법 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산식 :  $40\text{만원} \div \text{해당월 총일수}^* \times \text{근로자의 해당월 실제 근무일 수}$

\*예) 2월 28일, 3월 31일, 4월 30일

※ 재단 급여 지출 기준을 적용하여 월마다 다르게 적용

## 나. 교육 운영

- 목적 :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근로자 교육 장려
- 교육 내용 :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,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

※ <참고> 교육 운영이 힘든 사업장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 안내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꿈날개 ([www.dream.go.kr](http://www.dream.go.kr))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 상단에 직업교육 > 온라인과정 수강

## 5

##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

### 가. 기업 선정 취소 기준: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

-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(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)
- 참여자격 제외 기업 또는 부적격 근로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-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

### 나. 지원금 지원 중단 기준

-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단이 안내한 기한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
- 이 외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자격이 해당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
## 6

## 참여안내 및 문의

-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)270-9941